

##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

송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은 충청북도의 출연금 등이며,

안 제13조 운용기금의 사용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등입니다.

안 제5조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에 기금의 지원은 1999년부터 시행하고,

충청북도의 출연금은 1998년부터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정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3조 기금의 조성

제1항 제2호 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은

상위법령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단서를 근거하여 규정하였던 것이나  
최근 타 시도에서도 법의 취지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고 있는 추세이고,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안 제3조 제1항 제2호 자치단체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재산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138
----------	-----

발의년월일 : 1997. 5. 29

발 의 자 : 송옥순 의원

## □ 제안이유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안 제3조)
  - 충청북도의 출연금
  - 자치단체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재산
  -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 운용기금의 사용 (안 제13조)
  -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의 건전한 시민운동
  -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 여성의 사회교육사업
  -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구성 (안 제5조)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여성 및 여성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여성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자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 관련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 간 사 : 충청북도 여성복지과장

○ 기금의 지원 및 충청북도의 출연금 예산계상 (안 부칙)

- 기금지원 : 안 제13조에 의한 기금의 지원은 1999년부터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안 제3조 제2항에 의한 충청북도의 출연금은  
1998년부터 예산계상할 수 있음

□ 근거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여성 및 여성단체 (이하 "여성" 또는 "여성단체" 라 한다) 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의 출연금
2. 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기타 수입금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당초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여성 및 여성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여성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 관련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 조성 및 기본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국장으로서, 기금출납원은 생활지도계장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계획) ①기금관리계획은 매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방법
2.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운용기금의 사용)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건전한 시민운동
3.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4. 여성의 사회교육사업
5.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6.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4조(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 운용 상황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기금지원) 이 조례 제13조에 의한 기금의 지원사업은 1999년부터 시행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이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1998년부터 본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관 계 법 령 발 취

○ 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5136호)

제1장 총칙

-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장 여성발전기금

- 제29조 (기금의 설치 등)
- 제30조 (기금의 용도)
- 제31조 (기금의 회계기관)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099호)

제4장 여성발전기금

- 제29조 (기타 수입금)
- 제30조 (기금의 관리·운용)
- 제31조 (기금운용심의회)
- 제32조 (기금의 용도)
- 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 女性發展基本法

第5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男女平等의 촉진, 女性의 社會參與擴大 및 福祉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財源을 調達할 責務를 진다.

## 第4章 女性發展基金

第29條 (基金의 設置등) ①國家는 이 法의 目的을 實現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女性發展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國家의 出捐金
2. 國家의 의 者가 出捐하는 現金·物品 기타 財産
3. 基金의 운영으로 생기는 收益金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③基金은 政府가 관리·運用한다.

第30條 (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사용한다.

1. 女性의 權益增進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女性團體事業의 지원
3. 女性關聯施設의 設置 및 운영의 지원
4. 女性의 國際協力事業의 지원
5. 기타 男女平等實現과 女性發展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第31條 (基金의 會計機關) ①政府는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業務를 行하기 위하여 소속公務員중에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하여야 한다.

②會計關係職員等の責任에關한法律중 財務官과 歲入徵收官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命令官에게, 支出官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公務員에게 準用한다.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9조 (기타 수입금)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기타 정무장관(제2)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30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정무장관(제2)은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1.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용자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정무장관(제2)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투자 및 용자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여성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무장관(제2)실에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정무차관(제2)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원·보건복지부·노동부·정무장관(제2)실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정무장관(제2)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2. 여성발전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정무장관(제2)이 위촉하는 자

④기금심의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 (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 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
2.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
3. 여성의 자원활동
4.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 및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5. 유공자 포상 및 격려
6. 기타 정무장관(제2)이 여성발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정무장관(제2)은 법 제3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